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422
----------	--------

제안년월일 : 2015년 6월 2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사회적경제위원회는 행정1부시장이 위원장이며, 경제진흥본부장이 부위원장이 되는데,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고려하여 당연직 위원인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과장’과 ‘예산담당 업무 담당 과장’을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국장’과 ‘예산 업무 담당 국장’으로 안 제9조 제5항을 수정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위원회의 위원 중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과장’과 ‘예산담당 업무 담당 과장’을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국장’과 ‘예산 업무 담당 국장’으로 수정함(안 제9조 제5항).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5항제2호 ‘시의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과장’을 ‘시의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안 제9조제5항제3호 ‘시의 예산담당 업무 담당 과장’을 ‘시의 예산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p>제9조(사회적경제 정책 심의·조정)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 등 사회적경제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희망경제위원회에 상정한다.</p>	<p>제9조(사회적경제위원회)</p> <p>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발전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p>	<p>제9조(사회적경제위원회)</p> <p>①~④(개정안과 같음)</p>

호선하는 자가 되고, 부
위원장은 경제진흥본부장
이 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시의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과장

3. 시의 예산담당 업무
담당 과장

4.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자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
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
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
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
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
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
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
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개정안과 같음).

2. -----
----- 국장

3. -----예산 업무 담당
국장

4.~5.(개정안과 같음).

⑥~⑪(개정안과 같음)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닐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⑪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사회적경제위원회)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발전과 관련한 주요 정책 및 기본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진흥본부장이 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시의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국장
 3. 시의 예산 업무 담당 국장
 4.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⑧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⑩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⑪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부터 제23조를 제11조부터 제24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사회적경제 정책 심의·조정)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 등 사회적경제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희망경제 위원회에 상정한다.</p>	<p>제9조(사회적경제위원회)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발전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진흥본부장이 된다.</p> <p>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시의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국장 3. 시의 예산 업무 담당 국장

4.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p>한다.</p> <p>⑩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p> <p>⑪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제10조 ~ 제23조 (생략)	제11조 ~ 제24조 (현행과 같음)